

변경된 1회용품 사용규제 비교표('23.11.7. 환경부)

※ 기존 규제 품목은 규제유지

구 분		기 존 (‘22.11.24~‘23.11.23)	변 경 (‘23.11.24일 이후)
1회용 품목	대상 업종		
종이컵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규제 제외
플라스틱 빨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매장 내 사용금지 (계도기간 연장*)
젓는 막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매장 내 사용금지
비닐봉투	종합소매업 등	사용금지	사용금지 (대체품 사용)
응원용품 (합성수지 재질)	체육시설	사용금지	사용금지
우산비닐	대규모점포	사용금지	사용금지

※ 플라스틱 빨대 계도 종료시점은 UN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 대상 업종별 매장 예시

- ① 식품접객업 : 일반·휴게음식점, 단란·유흥주점, 제과점, 위탁급식 등
- ② 집단급식소 : 학교, 회사, 공공기관 등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1회 50명 이상)
- ③ 종합소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
- ④ 체육시설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⑤ 대규모점포 :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매장 면적 3000m²이상의 사업장

< 업종별 준수사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 2]) >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ナイ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억제)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4. 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 1회용 우산 비닐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 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 광고선전물

< 1회용품별 준수사항 (현행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 2]) >

1회용품	업종	준수 사항
1.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금지)
2. 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3.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4. 1회용 나무젓가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금지)
5.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6. 1회용 수저·포크·ナイ프		
7. 1회용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8.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9. 1회용 광고선전물 (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과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대규모점포 ·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10.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11. 1회용 봉투·쇼핑백 (종이재질 봉투 및 쇼핑백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점포, 종합소매업, 제과점 	사용억제(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접객업(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무상제공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12. 1회용 응원용품 (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등) 	무상제공금지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13. 1회용 우산 비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